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행심2020-3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사회봉사 3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고등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3.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3일 등』
처분을 『학교에서의 봉사 1일 2시간씩 3일,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이수 5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3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구 ☆☆동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라고 한다) 0학년 0반에 재학 중이던 2019. 11. 21.

1교시 수업 중 같은 반 ●●● 학생(이하 ‘이 사건 피해학생’ 이라고 한다)이 햇빛을 가리려 창문 커튼을 절반만 치자 청구인은 나머지 부분도 쳐줄 것을 3회 정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학생은 청구인이 자신에게 화를 내며 요구한다고 느껴서 무시하자 청구인이 다가와 말싸움이 벌어졌고, 이 사건 피해학생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 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수업 담당교사가 중재하였고, 1교시 수업 후 쉬는 시간에 이 사건 피해학생은 안전생활부로 가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진술하면서 그동안의 일을 기록한 핸드폰 내용을 제출하였다.

나.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라 한다)는 2019. 12. 12.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청구인과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은 다음,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 한다)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6-99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2점(보통), 학교폭력의 지속성 0점(없음), 학교폭력의 고의성 1점(낮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2점(보통), 화해 정도 2점(보통)으로 판정하여 그 판정점수 합계 7점에 해당하는 조치로 ‘사회봉사 3일(제4호)’ 과 부가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각 ‘특별교육 5시간’ 의 조치를 의결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2. 17. 청구인에게 『사회봉사 3일, 부가적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의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2. 23. 이 사건 처분을 알고서 이에 불복하여 2020. 1.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선도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는 공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직접적인 자신의 생각을 적기보다는 토론 형식으로 한 명이 주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은 군특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어 졸업과 동시에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에 인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학생이 자살시도를 했다는 내용도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 정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조치결과 통지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회의록에도 정확한 내용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공평성을 위해 위원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도록 주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이 사건 피해학생을 강제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잡아끌어 올린 부분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판정되었기에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가 공정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총 9명으로 자치위원의 과반수 이상인 5명의 학부모위원, 경찰관과 변호사인 2명의 전문가위원, 교원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 2명의 보호자인 학부모위원을 제척하여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2명, 경찰인 전문가위원 1명 총 5명으로 진행하여 조치결정에 있어 의견을 나누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 다. 이 사건 학교는 ■■■■학교로서 청구인과 이 사건 피해학생 등 모두 ■■■■학급에서 기술 부사관으로 진로를 희망하며, 학생들의 학업능력,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 체력, 기술, 생활태도 등 3년간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선발된 학생들이 기술 부사관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 피해학생은 청구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의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아 청구인을 ■■■■학급에서 일반 다른 학급으로 이동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최대한 학생의 진로를 고려하여 ■■■■학급이 아닌 다른 학급으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조치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의 ‘이 사건 피해학생에 대한 청구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부분과 이 사건 피해학생이 자살시도를 한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기재한 것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며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에 관련 내용은 침삭하지 않고 모든 내용이 제공되므로 이 사건 피해학생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정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인천 ★★★구 ☆☆동에 있는 이 사건 학교 0학년 0반에 재학 중이던 2019. 11. 21. 1교시 수업 중 같은 반 이 사건 피해학생이 햇빛을 가리려 창문커튼을 절반만 치자 청구인은 나머지 부분도 쳐줄 것을 3회 정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학생은 청구인이 자신에게 화를 내며 요

구한다고 느껴서 무시하자 청구인이 다가와 말싸움이 벌어졌고,

이에 청구인은 수업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학생에게 다가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학생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수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학생에게 다가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학생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행위 등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인 사회봉사처분 등은 청구인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사회봉사처분 등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형평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3일(1일 각 2시간)과 부가적으로 청구인 및 보호자에 대하여 각 특별교육 5시간으로의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여 재결한다